

●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4호

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(를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1월 07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

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5조(농지원부의 작성·비치)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구·읍·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원부를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.

제5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- ④ 시·구·읍·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.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.

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농 지 원 부

장번호: 1/2

고 유 번 호						발급번호											
XXXXXXXXXX-X-XXXX-XXXX-XX(일련번호)						XXXXXXXX-XXXXXX-XXXXX											
소 재 지	지번	지적공부			농지구분	현황(실제)		소 유 사 항									
		지목	면적 (㎡)	용도 지역		지목	면적 (㎡)	소유 일련 번호	등기 원인	원인 일자 (등기신청 접수일)	성명 (법인명)	주민등록 (법인)번호	주소	소유 면적 (㎡)	이용 현황	경작 현황 (확인 일자)	

※ 기재사항 안내: 소재지, 지번, 지적공부는 토지(임야)대장을 기준으로 표시되며, 등기원인 및 등기신청 접수일자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표시됩니다.

임대차 현황

소유 일련 번호	임대차 사항							관리기관 확인		
	구분	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면적 (㎡)	임대료 (원)	임차기간	등록기관	담당자	확인일

※ '96.1.1. 「농지법」 시행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「농지법」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가 가능합니다.

농 지원 부

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이용실태조사, 농지전용 현황

농지취득자격증명					농지이용실태조사					농지전용				
일련 번호	신청인	취득 목적	신청 면적 (㎡)	발급일	조사기관	조사일	이용현황	경작현황	처분현황	구분	허가·신고 · 협의 기관	허가 협의·신고 일자 (기간)	전용목적 (내용)	전용면적 (㎡)

※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전용은 최근 3년에 대한 현황이 기록되며, 농지이용실태조사는 2021년 이후 최근 3개년 조사 및 처분 현황이 기록됩니다.

위와 같이 농지원부를 발급합니다.

수수료 :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74조에 따름

년 월 일

시장 · 구청장 · 읍장 · 면장

직인

농지원부 등본발급대장

접수일자 (접수번호)	발급 번호	발급 일자	발급 구분	신 청 인			신청 농지원부			용도	비고
				성 명	주민등록번호	주 소	농지소재지	지번	부수		

※ 발급구분 : 인터넷, 무인민원, 창구민원